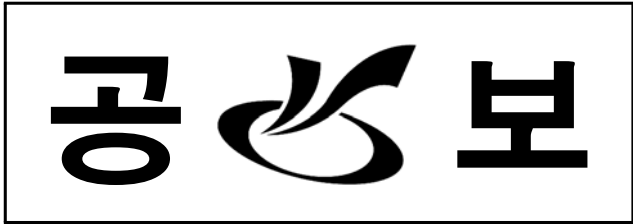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3호
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2호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3호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6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4호 인천광역시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5호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40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7호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 46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보사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

관” 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제3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 를 각각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국정홍보처장”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의2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 을 각각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 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 단서 및 제5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 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선진서구 건설을 위한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제2조(기능)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적인 시각의 정책사업 발굴
3. 구정 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시 정책방향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 지역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전직 지방의원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지방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 간사는 기획홍보실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배부) 안전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기획단

제10조(설치)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2명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의 개발·조사·분석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단장 등) ① 단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임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전문위원의 채용) ① 전문위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14조(보수 등)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월례회의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전문위원은 당해연도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① 구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기획단 및 관계공무원의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현안 등 특정과제의 연구를 전문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정 원	명	참 석	명	불 참	명
안 건					
회의결과					

1.

○

○

2.

○

○

3.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제22조제1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

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3조제7항제1호 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 표창 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관리공단이”를 “임대사업자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사업용” 을 “아파트형 공장용” 으로 한다.

제17조 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18조 중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를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로 한다.

제21조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 을 “물류산업지원” 으로 하고,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3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구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96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 시설”이란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교육수강 및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센터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 에어로빅실, 세미나실, 체육관
2. 부속시설 :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및 대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구민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등 위험이 예상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2. 체육관 대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사용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날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3. 체육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①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 단체 및 공기업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 (제10조 관련)

구 분	사 용 시 간
조 기	06:00~09:00
오 전	09:00~13:00
오 후	13:00~18:00
야 간	18:00~22:00

[별 표 2]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제11조 관련)

1. 수영장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학생이하)		1,5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		2,200	
성 인		3,000	
단 체	어린이	1,400	
	청소년	1,700	
	성 인	2,800	
월 회 원	어린이	28,000	
	청소년	33,000	
	성 인	42,000	
강습회원	어린이	38,000	
	청소년	44,000	
	성 인	52,000	

2. 체력단련실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청소년		1,000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성 인		2,000	
월 회원	청소년	25,000	
	성 인	35,000	

3. 체육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생이하)		700	○ 사용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회 대관은 별표1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청소년(중·고생)		1,200	
성 인		1,500	
체육관 대관		80,000	

4. 교육 수강료

가. 문화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문화프로그램	20,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1주 2회 이상(1회1시간) ○ 4주를 1개월로 봄 ○ 1개월, 1명 기준

나. 체육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탁구,우슈 검도,태권도 농구,기타	어린이	3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 1시간 기준, 단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청소년	35,000	
	성 인	40,000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
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총무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
 6.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
 7. 지출원 :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담당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
 10.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로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17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

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당초납부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국장
2. 기획홍보실장
3. 건설과장
4. 교통담당과장
5.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규	칙
---	---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체육센터의 장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서구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나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이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모집 등) ① 정기과목을 수강하는 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 신청시 수강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강좌의 특성상 시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연기신청) 회원의 사정으로 강좌의 참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좌 시작 7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5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제8조(휴관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
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의한 휴일
3.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9조(운영시간)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구체육센터 시설(변경)사용 신청서					담당자	관 장	결 재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주민등록 (사업자,법인) 번호				
	주 소		연 락 번 호		전 화 : H P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시간) (일간)				
	본행사시간	년 월 일 시	준비시작 시간		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 마이크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에어로빅실 ○ 세미나실 ○ 체육관						
산출내역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위와 같이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단 체 : (성 명) : 주 소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변경)사용 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사용목적	목 적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일간)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국 민 체 육 센 터 장

(별지 제3호서식)

부 대 시 설 사 용 확 인 서

(단위 : 원)

사용시설명		서구국민체육센터()		
행 사 명				
부대시설	구 분	사용시간	산출금액	담당확인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난 방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냉 방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총 금 액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단 체 명 :

확 인 자 :

(인)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장 귀하

훈 령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7호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